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 구체화
 - 자료(데이터)의 안전성 확보방안 및 자료(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위해 방지방안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상공인법 시행령”이라 한다.)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3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혁신모형(모델) 확산 등의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의 조문 신설이 이루어짐에 따라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및 데이터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위해 방지방안 마련 등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자료(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창출 생태계 조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은 올해부터 3년간 구축되어 예비창업자부터 기존 소상공인까지 상권분석, 맞춤형 상담(컨설팅) 등의 소상공인 전주기 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배석희 (044-204-7820)
		담당자	사무관	박준성 (044-204-78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5조의2(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 2. 지역별 인구, 가구 수 등 인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자 수, 차량 등록 대수 등 교통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공실률(空室率)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 5. 지역별 사업체 관련 자료 또는 정보 6. 지역별 상권의 매출액 관련 자료 또는 정보 7. 소상공인 관련 정부 지원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 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중 소상공인 사업체의 종사자 수 및 경영상태 관련 자료 또는 정보

<신 설>

제5조의3(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법 제15조의5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데이터등”이라 한다)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법 제15조의6제4항에 따라 데이터 [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당 데이터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데이터의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데이터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데이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 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제5조의4(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위해 방지) 데이터등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법 제15조의6제4항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범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 및 서비스의 위해 발생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의5(플랫폼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신청) 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플랫폼 활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플랫폼에서 공유하려는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방안
2.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계획서
3.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정보 서비스와 플랫폼과의 연계 방안